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3. . . (제 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국가보훈처 소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환수하는 경우 이자 가산 및 채납자에 대한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92호, 2022. 12. 16. 공포, 2023. 6. 1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생활조정수당 지급대상자 발굴을 위해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제공 요청 범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에 관한 자료를 추가로 포함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재심·재확인·재판정 신체검사 절차 명확화(안 제10조제4항 신설)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도록 제4항 신설

나. 서면 신체검사 대상 확대(안 제13조제7호)

서면 신체검사 대상자에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를 포함)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기관의 범위 규정 (안 제13조의2)

국군수도병원, 경찰병원, 기타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도록 함

라. 상이등급 판정자료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보완 규정 마련(안 제19조제2항)

신청인(신체검사 대상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보훈심사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 등에 응하지 않아 객관적인 상이정도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체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정

마. 간호수당 및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지급 특례 마련(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대통령령 부칙 제23885호 부칙 제10조에 따라 간호수당 등을 지급 받던 사람(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자)에 대하여 매년 부칙 규정을 개정하여 수당을 인상하여 지급하던 것을 본칙에 특례규정을 마련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바. 이자 및 연체금의 산정기준 마련(제95조제1항 및 제2항)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국세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국세환급가산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2) 환수금을 납입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 징수하는 연체금은 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 되, 연체금 부과기간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

사. 환수금 분할납부 제도 마련(제95조제6항 및 제7항)

납부의무자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최대 60회 이내에서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함

아. 장애인 인정에 대한 신체검사 준용 규정 정비(안 제100조)

생활 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 인정 등에 대한 신체검사 준용 범위에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적용을 제외

자.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의 범위 구체화 (별표10의2)

생활조정수당 및 추가지원금 지급, 상속인에 대한 보훈급여금등 환수처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정보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의 제목“(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을“(서면심사에 의한 신체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로써 보훈병원장이 서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의2(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법 제6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국군수도병원
2. 경찰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74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제출된 자료만으로 객관적인 상이정도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체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제2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라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1. 1급 1항: 월 291만5천원
2. 1급 2항: 월 280만5천원
3. 1급 3항: 월 269만7천원

4. 2급: 월 93만2천원

제26조의3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같은 부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9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환수처분 통지 전에 보훈급여금등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의 계산기간은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반환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한다.

2. 상속으로 받은 재산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서 정하는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연체금은 환수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체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95조제3항(중전의 제1항) 전단 중 “환수하여야 할 보훈급여금등의 환
수 사유가 발생한 때”를 “환수하는 경우”로, “자”를 “사람”으로, “자는 제
외한다)에게 보훈급여금등의”를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환수금”으로 하
고, 같은 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반납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반납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
내에 반납금을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정하는 국고수납기관에 납입하여
야 한다.

제95조제4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자에”를 “사람
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을 “제3항
과 제4항”으로, “자는 국고수납기관에 반납금을 납입하여야 하며,”를 “사
람으로부터 반납금”으로, “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반납금영수확인통지
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⑥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를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
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환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
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훈급여금등에 제1항제1호에 따른 이
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과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
다. 다만, 법 제75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
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
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분할
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후단 부분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하
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8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
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국세강제징수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7조제1항제1호 중 “계급·군번·성명·본적·사상일자”를 “계급·
군번·성명·등록기준지·사상일자”로 한다.

별표 10의2 제22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제25호부터 제30호까지로 하
고, 같은 표 제8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22호까지로 하

며, 같은 표에 제8호, 제23호 및 제2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27호(중전의 제24호) 중 “관한”을 “관한 정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에 관한”으로 한다.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이 호에서 “법”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관련 자료

나.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관련 자료

2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관련 자료

24.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관련 자료

제100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0조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02조제1항제3호 중 “상이등급”을 “상이등급 심사의 의뢰, 상이등급”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3조의 2, 제95조의 개정규정 중 이자 가산과 연체금의 징수에 대한 부분, 제100조는 202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4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장해진단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법 제6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항 및 제4항,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으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정부조직법 제35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26조제2항, 제26조의3제3항, 제95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국가보훈부장관”은 법률 제19228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국가보훈처장”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 ③ (생략)	제10조(국가유공자의 요건 심사 및 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의3제8항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 영에 따른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7조 제5항 및 제7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법 제6조의3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병명란에 최종 진단을 적은 것으로 한정한다)를 제출하는 경우 5. 6. (생략)	제13조(서면심사에 의한 신체검사) -----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 제></u> ----- 5. 6.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생략)

<신 설>

7. 중증 암환자, 중증 뇌혈관질환자, 중증 심장질환자, 중증 화상환자, 중증 외상환자 등 신체검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것이 어려운 환자로서 보훈병원장이 서면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의2(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발급 의료기관) 법 제6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1. 국군수도병원
2. 경찰병원
3.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의료기관

제19조(상이등급의 판정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법 제

	74조의8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등 요구에 응하지 않아 제출된 자료만으로 객관적인 상이 정도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신체 장애가 없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제1항·제2항 및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신체검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 ----- ----- ----- --.
제26조(간호수당) (생략)	제26조(간호수당) (현행과 같음)
<신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및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부칙 제10조제2항에 따른 간호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라 간호수당을 지급한다. 1. 1급 1항: 월 291만5천원 2. 1급 2항: 월 280만5천원 3. 1급 3항: 월 269만7천원 4. 2급: 월 93만2천원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② (생략)	제26조의3(중상이부가수당) ①·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대통령령 제23885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 1급 특별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같은 부칙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상이등급 구분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제95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신설>	제95조(보훈급여금등의 환수) ① 법 제7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처분의 통지를 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75조제 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훈 급여금등의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급여금등을 받은 자

②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연체
금은 환수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그 환수금을 모두 낸 날
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체납된
보훈급여금등에 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
정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연
체금을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
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
----- 환수하는 경우 -----

----- 사 -----

<신 설>

⑥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 내에서 분할

<신 설>

납부를 승인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환수금을 매월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 납부하려는 사람은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환수금 분할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1.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20회

2. 반납해야 할 금액이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인 경우: 40회

3. 반납해야 할 금액이 2천만원 이상인 경우: 60회

⑦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 가산하는 이자는 분할납부 기간 동안 내야 할 보훈급여금등에 제1항 제1호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이 경우 회당 분할납부할 금액은 분할납부 횟수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환수금과 이자를 똑같이 나눈 금액으로 한다. 다만, 법 제75조제1항제3

<신 설>

<신 설>

제97조(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 법 제76조에 따라 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의 착오나 누락으로 처음부터 보훈급여금등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자를 면제한다.

⑧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환수금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사람이 분할납부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은 분할납부 승인을 취소하고, 환수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수 있다.

⑨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 후단 부분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반납하여야 할 금액 전액을 내지 아니한 경우와 제8항에 따라 환수금과 연체금을 한꺼번에 환수할 경우에는 법 제75조제3항에 따른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7조(보훈급여금등의 반환의무의 면제사유) ①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과	
연 락 처 보상정책과 등록관리과	(044) 202 - 5420 5438